

2026년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



대전광역시
노인복지과

2026년 장기요양요원(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계획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해 장기요양요원(사회복지사)을 대상으로 처우개선비(장기근속수당, 명절수당)를 지원하고자 함.

I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6항
- 「대전광역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 제5조

□ 추진배경

- 통합돌봄 전국 시행 및 고령화 사회 등에 따른 장기요양 수요급증에 비해 불안정한 고용, 낮은 처우 등으로 인력 수급 문제 우려
-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에 제외된 장기요양기관 시설종사자 역차별 해소 필요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에 대한 합리적, 체계적 처우개선으로 노인 돌봄 서비스 질 향상 및 사회복지 전문인력 안정적 확보 기여

II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1. ~ 12.
- 대상기관: 대전시 내 지정등록된 장기요양기관
※ 2026년 기준 정상운영 기관(휴·폐업 제외), 2026년 신규지정 기관 익년 지원
- 사업대상: 장기요양기관 소속 장기요양요원(사회복지사) 1,117명
- 지원방법: (교부) 자치구 → (지급) 소속시설
- 소요예산: 1,117,000천원 (시비 781,900 구비 223,400 자부담 111,700)
- 추진일정

주요 추진내용	25. 12월	26. 1월	26. 1월~12월	27. 1월	27. 2월
세부실행방안 논의(자치구·장기요양협회)					
사업 안내 및 사전 준비					
보조금 교부 및 수당 집행					
정산 안내					
정산 보고 및 집행잔액 반납					

Ⅲ 세부지원계획

① 지원절차 및 유관기관

○ 지원절차

사업계획 수립	예산 교부	집행	정산
(市) 사업계획 총괄 (區) 세부계획 수립	(區) 기관별 보조금 교부(분기별) (기관) 보조금 신청	(기관) 대상자 확인 및 지급 (대상자) 지급신청	(기관) 보조금 정산 (區) 정산점검·보고 (市) 정산점검·확정
'26. 1월	'26. 1~12월	'26. 1~12월	'27. 2월한

○ 유관기관

기 관	관련 업무
시청(노인복지과)	사업총괄, 사업 계획 수립, 예산 교부, 세부지침 마련
자치구(장기요양담당)	세부계획 수립, 사업기관 선정 및 예산 교부, 정산
장기요양기관	보조금 집행, 집행결과 정산 및 보고

② 사업예산

(단위: 명 / 천원)

자치구	사업량	예산액				비고
		계 (100%)	시비 (70%)	구비 (20%)	자부담 (10%)	
계	1,117	1,117,000	781,900	223,400	111,700	
동구	178	178,000	124,600	35,600	17,800	
중구	303	303,000	212,100	60,600	30,300	
서구	308	308,000	215,600	61,600	30,800	
유성구	196	196,000	137,200	39,200	19,600	
대덕구	132	132,000	92,400	26,400	13,200	

* 장기근속수당: 1인당 50,000원 / 12개월

* 명절수당: 1인당 200,000원 / 2회(설, 추석)

③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희망e음)으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사회복지사 직종으로 보고된 자
- 월 160시간 이상 근무(일 8시간, 월 20일 이상)하는 종사자
- 지급기준(2026년) 동일 사업장에 1년 이상 연속하여 근로한 종사자
- 동일 법인(대표자) · 시설 내 인사이동인 경우, 입사일이 빠른 기준으로 연속 근로기간 산정 (단, 노인장기요양기관 외의 시설 이동, 직종 변경 사유 불인정)
- 지급일(20일) 전, 1년 근로기간 충족하는 종사자의 경우 해당월 지급 / 지급일 이후 충족(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종사자는 익월 소급 지급
※ 지급일(20일) 이후, 개인사정(퇴사, 휴직 등)으로 월 근무시간 미충족(월 160시간 미달) 시, 전액 반환 조치

근무기간 예외규정

- 유급휴가(주말, 법정공휴일, 개인월차 등) 근무시간 포함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근무시간 포함
- 육아휴직 후 해당 장기요양기관으로 복직하는 경우 근무기간에 산입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재해로 근무하지 못한 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

④ 지원제외

- 노인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
- 설치자(대표자) · 시설장으로 사회복지사 업무를 병행하는 경우
- 자부담 하지 않는 경우
- 휴직, 휴업, 업무정지 기간으로 연속 근로기간이 1년이 되지 않는 경우
- 폐업 · 휴업 등의 사유로 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지 않을 경우
- 점검이나 평가 등에 협조하지 않거나 허위보고 하는 등 위반사항 적발 시 지원 중단 및 과오지급액 환수
- **(기관)** 운영주체(법인) 및 법인의 운영시설 등이 사회복지사업법,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련 법령 위반으로 사업정지(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중단(행정처분을 받은 해당 기간에 한함.)
- **(종사자)**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5(장기요양급여 제공의 제한)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종사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가담한 경우, 지원 중단(처분한 날로부터 1년)

⑤ 지급방법

- 자치구에서 노인장기요양기관으로 분기별 입금하고 시설에서 종사자에게 매월 20일에 입금(지급일이 공휴일, 주말인 경우 전일 지급)
- 시설에서는 입금대장과 별도로 특별수당 대장 작성 관리
- 입금명세서에는 특별수당 항목 별도 명시
(예) 시 정책지원금(장기근속수당): 00만원 등

Ⅳ 기관별 협조사항

① 자치구

- 세부추진계획 수립, 예산 편성 및 보조금 교부 · 집행 · 정산
- 교부 시 사업계획서, 보조금 별도 계좌 개설 및 자부담 입금내역 등 확인
-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상 종사자 입·퇴사 내용과 시설 종사자 수당 지급대상과 명부 대조
- 보조금 지원시설 연 1회 지도점검 실시(장기요양기관 지도점검 시 병행 추진)

② 장기요양기관

- 원활한 지급을 위하여 **기관별 자부담분** 확보
 - 본 사업을 위한 **별도의 계좌 개설 및 자부담분 입금 후 보조금 교부** 신청
- 지원대상 기준에 적합한 처우개선비 지급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교부신청서, 자부담 통장
 - 실적보고서, 보조금 지출 관련 증빙자료 입력 및 개별 지급
- 입금대장과 별도로 수당 지급대장^(붙임2 참고) 작성 및 관리
- 구비서류 및 증빙자료(근무개월 산출 관련 자료*)는 기관에서 원본 보관 철저, 추후 자료 제출 요구 시 제출 필요
 -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고용보험, 산재보험 납부내역, 임면보고 등 증빙가능서류
- 해당 수당은 종사자 사기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자체 정책지원금으로 최저임금 포함 불가

V 향후 행정사항

- 2026년 보조금 교부: '26년 분기별
-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사업설명 추진: '26년 1월 중
- 2026년 보조금 정산: '27년 2월한
- 2026년 지원 현황 점검: 수시

-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현황 1부.
2.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수당 지급대장(안) 1부.

붙임 1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현황[25.11.3. 기준]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현황

(단위: 개소 / 명)

구분	총계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비고
	시설수	종사자	시설수	종사자	시설수	종사자	시설수	종사자	
계	596	1,112	121	265	264	495	206	352	
동구	106	201	26	58	41	80	34	63	
중구	158	272	23	47	59	99	76	126	
서구	166	309	35	74	82	151	49	84	
유성구	90	177	19	48	46	86	25	43	
대덕구	76	153	18	38	36	79	22	36	

○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근무기간 현황

(단위: % / 명)

구분	총계		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재가장기요양기관		비고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비율	종사자	
계	100	1,112	100	265	100	495	100	352	
1년미만	36.4	405	21.9	58	37.4	185	46.0	162	
1년이상 ~3년미만	31.2	347	40.0	106	30.5	151	25.6	90	
3년이상 ~5년미만	14.1	157	4.9	13	162	80	18.2	64	
5년이상 ~7년미만	9.1	101	18.9	50	3.0	15	10.2	36	
7년이상	9.2	102	14.3	38	12.9	64	0.0	-	